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5)

치료 과정 중의 주의사항

한 두 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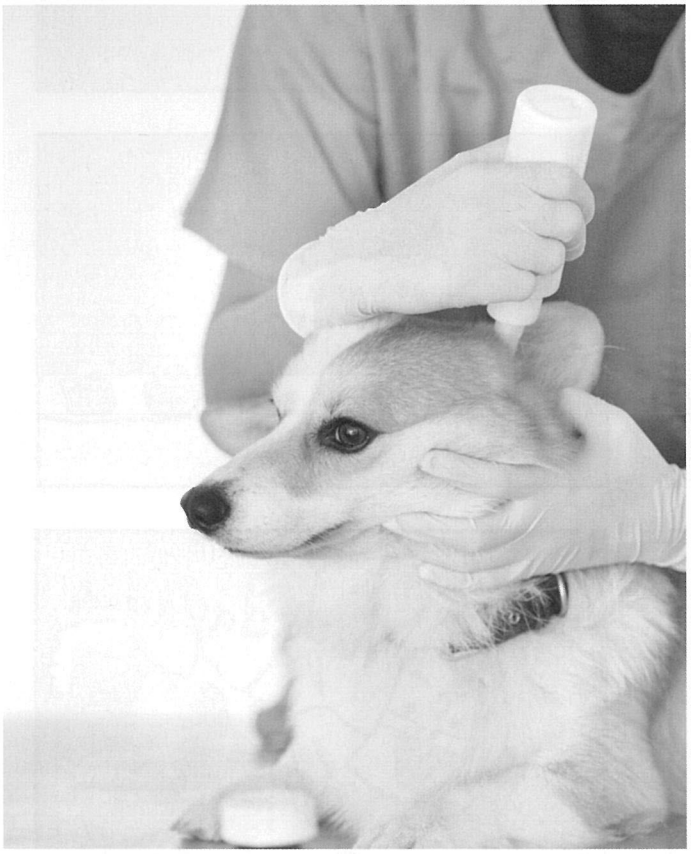

김명의 수의사의 명의동물병원에 이견주씨가 반려견 순돌이를 데리고 내원하였다. 진단 결과 순돌이는 낙상을 입어서 요척골 골절이 있었고, 수내정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평소 자주 사용하는 DZT합제 중 도미토(Domitor)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발견하였지만,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것은 아니고 시술 시간도 짧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인지 수술 중 순돌이가 마취에서 조금씩 깨어났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수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마취를 연장하지 않고 수술을 서둘러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조 술자인 박고용 수의사로 하여금 순돌이를 단단히 잡게 한 상태에서 수내정을 삽입하고 수술을 마무리 지었다.

수술 후 순돌이는 골절이 완쾌되었지만 박고용 수의사는 죄책감이 들었다. 박고용 수의사는 이견주씨에게 수술과정을 털어놓았고, 이견주씨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김명의 수의사를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처벌이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김명의 수의사가 고의적으로 순돌이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순돌이의 골절이 치유되었지만, 순돌이의 골절 수술 전후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살펴보자.

1.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물의 사용

김명의 수의사는 도미토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발견하였지만,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중략)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잉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하위 행정입법에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의사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호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재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법문이 각 행위마다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로 법문을 작성하지 않고 '행위'에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와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는 경우가 병렬적으로 적용되도록 법문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해서 질병이 악화되는 결과까지 발생해야 제재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해서 순돌이가 수술 중 마취가 깬 것이 순돌이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다시 문제된다. 순돌이는 요척골 골절이라는 질병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인데, 마취가 깬 것만으로 요척골 골절이 악화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마취가 깬 것이 질병이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김명의 수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도미토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는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2. 마취 연장 없이 수술을 마무리한 행위

김명의 수의사는 수술 중 순돌이가 마취가 깨어나는 상황에서 마취를 연장할 수 있었다. DZT합제의 경우 DZT합제를 추가로 투여하거나 도미토만을 투여하여 마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명의 수의사는 수술이 끝나가니 마취 연장 없이 서둘러 수술을 마무리 하였다.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수의사법 시행령]은 제20조의2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며, 수술이 끝나가는 상황인 것이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김명의 수의사가 마취 연장 없이 수술을 마무리한 것은 [수의사법] 제32조 제2항 위배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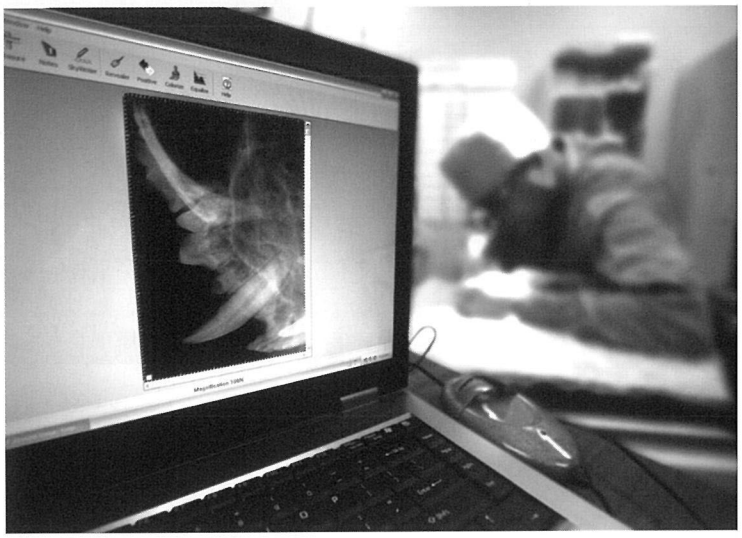

3.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김명의 수의사의 대응방법은?

김명의 수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는 [수의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행정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타당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명의 수의사가 이와 같은 사례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술을 마무리한 시간이 매우 단시간이었다는 등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의 면허정지가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법적 제재보다 수의사의 직업윤리를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물을 사용한 것만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질병 악화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그리고 환자가 치료 과정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에 준하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제재 여부를 떠나 수의사로서의 직업윤리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